

국회에서 의결된 기후·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.

대 통 령 이 재 명 인

2026년 3월 17일

국 무 총 리 김 민 석

국 무 위 원 김 성 환  
기 후 에 너 지 관 김 성 환  
환 경 부 장 관 김 성 환  
국 무 위 원 윤 호 중  
행 정 안 전 부 관 윤 호 중  
장 (해양수산부 소관)

● 법률 제21464호

기후·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

기후·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2항제3호 중 “기후예측 대상 기간을 계절과 연 단위로 하는”을 “다음 각 목의”로 하고,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가. 계절전망: 기후예측 대상 기간을 계절 단위로 하는 기후예측 정보

나. 연(年)기후전망: 기후예측 대상 기간을 연 단위로 하는 기후예측 정보

다. 근(近)미래전망: 기후예측 대상 기간을 1년 초과 10년 이하로 하는 기후예측 정보

제11조제1항 중 “이용한 기후”를 “이용한 국가기후예측시스템 등 기후”로, “운영할 수 있다”를 “운영하여야 한다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따른 기후”를 “따른 국가기후예측시스템 등 기후”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◇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기후변화의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영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기상청장이 생산하는 기후예측 정보 중 기후전망의 유형을 계절전망, 연(年)기후전망 및 근(近)미래전망으로 구분하여 정의하고, 국가기후예측시스템의 구축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기후·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인 감시 및 예측을 강화하고 국가의 기후 대응 전략 수립과 공공정책 개발에 기여하려는 것임.

<법제처 제공>